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1993. 4. 14

문교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월 29일

○ 회부일자 : 1993년 1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제8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 3. 4) 상정

○ 제88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 4. 12) 재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박 석 호)

가. 제 안 이 유

大淸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内에 설치되는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 요 골 자

大淸湖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비용 등의 세입, 세출항목 및 운용 전반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본 조례안은 大淸상수원의 수질을 개선, 보존하기 위하여(환경보전법 <1986. 12. 31> 제 7조에 의하던 것을 환경정책기본법<1990. 8. 1> 제22조를 근거로 한) 환경처 고시 제90-15호(90.7.19)에 의해 대청호 유역 666.22 ㎢가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 처리장, 간이오수 처리장, 축산폐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3개 市.道 (대전직할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분담하기로 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內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案)를 바탕으로 하여 시설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관리 등 세입.세출항목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추가 제출된 협약서(案) 내용中 본문 제9조(분담요소 및 대상시설의 조정)의 내용중 " 2년마다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와 부칙 제3조(유효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의 모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없 음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심 사 경 과 : " 원 안 가 결 "

7. 소수의견 요지 : " 당초 작성된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내용중 대전직
할시에서 "유효기간을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부칙을 달아 의결함에 따라 협약서 내용이 모순
되어 의결을 유보하였으나, 이문제가 해결됨이 따라
본 조례안은 타당함."

8.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조례안